





## 전문인력 체류허가권 및 자격과 고용간의 연계성 미적용

직업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 (체류법 제 18a 조)과 대졸 전문인력 (체류법 제 18b 조)의 체류허가 발급에 대한 주요 법적 근거가 두가지 측면으로 변경됩니다.

- 첫째,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 둘째, 직업교육을 통해 획득한 역량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규제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전문 직업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대학을 졸업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직장을 구할 때 본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에 국한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직업자격이 법규로 규제되어 있는 직종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 운전기사 고용

제 3 국 출신 운전기사 고용에 대한 연방노동공단의 승인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EU 또는 EEA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기본자격시험 혹은 약식 기본자격시험에 합격하였는지를 더 이상 검토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선권 심사도 없어지고 언어능력도 더 이상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 2024 년 3 월부터 적용되는 고용 및 인정 관련 새로운 규정

### 외국 직업자격 인정을 위한 체류

독일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교육을 받으면서 체류할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에서 획득한 전문자격을 바탕으로 독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보충교육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18 개월 유효한 체류허가를 발급하고 있지만 (체류법 제 16d 조 제 1 항) 향후에는 처음부터 24 개월 유효한 체류허가를 발급합니다. 이 체류허가는 12 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 년까지 유효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에게는 더 많은 유연성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격교육을 받는 동안의 부직활동 허용 근무시간은 기존 주당 10 시간에서 20 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전문인력 준비생들이 보다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독일에서 자격교육을 실행하는 목적은 외국에서 취득한 직업자격에 완전한 동등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전문인력 이민법에서는 이와 관련 새로운 두 가지 경로를 도입합니다.

- **인정 파트너십을 통한 입국 및 고용:** 인정파트너십을 통해 숙련직 고용 근로 체류허가를 받고 자격인정에 필요한 절차는 입국 후에 병행하여 밟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격교육을 받으려면 입국 전에 인정절차를 신청하여 진행하거나 혹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이 독일 전문자격과 부분적으로 동등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향후에는 사전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자발급은 전문인력 준비생과 고용주에게는 입국 후 자격인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적극 추진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집니다. 인정 파트너십의 기본 전제조건으로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그 외에도 최소 2 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취득할 수 있는 직업자격이 있거나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하며 (둘 다 해당 교육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어야 함) 또한 A2 (GER) 수준 이상의 독일어 언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체류허가는 일반적으로 1 년 짜리로 발급되며 최대 3 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주로 부족한 부분이 실무능력인 경우 기존 체류법 제 16d 조 제 3 항 (구) 에 따른 인정을 받기 위한 체류는 앞으로 없어집니다. 일부 동등성에 대한 인정은 받았고 주로 실무능력이 없는 사람이 독일에서 직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자격교육을 받기 위해 입국하거나 (체류법 제 16d 조 제 1 항) 또는 인정 파트너십을 통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제 16d 조 제 3 항 (개정)).
- **자격 분석을 위한 입국:** 독일 관할 기관의 심사를 통해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동등성을 인정받기 위해 자격분석을 받아야 하는 자는 그 목적으로 최대 6 개월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의 하나로 독일어 지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A2 (GER) 수준의 독일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전문인력과 근로자의 고용

- **실무경력자에 대한 특별 규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인력에 대한 고용을 확대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모든 분야에 걸쳐 모든 비규제 직종**에 적용됩니다. 실무경력자의 자격요건으로는 해당 교육국가에서 인정하는 직업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대학을 졸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교육인 경우, 그 과정이 최소한 2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정의 경우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 대신 해외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전제조건은, 희망 직종에서 최소한 2 년 이상 일한 경력입니다. 독일에서 수료증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IT 전문가**의 경우 노동시장 접근이 더욱 쉬어집니다: 요구되는 전문경력 기간이 2 년으로 단축됩니다 (기존 3 년). 기존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 수료증이나 대학 학위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자발급에 있어 언어능력은 더 이상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 **3 국 출신 간호보조사의 노동시장 접근:** 계획된 개정법은 간호사의 노동시장 접근에 대한 규정에 제 3 국 출신 간호보조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3 년 미만의 간호전문과정을 이수한 제 3 국 출신자도 보건 및 간호 분야에 고용될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으로는 독일에서 해당 간호 직업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국에서 발급한 간호자격증을 독일에서 인정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건 및 간호 직업교육 수료 후 구직:** 독일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제 3 국 출신 간호 및 간병보조사는 향후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 개월 유효한 체류허가를 발급받게 되며, 계속 생계비 보장이 된다면 추가로 최대 6 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전문인력 영주권:** 독일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바 없고 독일에서 대학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지만 체류법 제 18a 조, 제 18b 조, 제 18d 조 또는 제 18g 조에 따라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고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은 3 년만 지나도 (기존 4 년) 독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U 블루카드 소지자는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U 블루카드로 근무한지 27 개월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어 능력이 충분할 경우 (B1 GER 수준) 21 개월만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대학 또는 직업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영주권 특별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전문인력“으로 근무하기 위한 체류허가 (체류법 제 18a 조, 제 18b 조 또는 제 18d 조) 를 취득한 후 2 년만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쉬워지는 전문인력 가족동반:** 특정 전문인력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동반하여 독일로 이주하는 경우 앞으로는 더 이상 충분한 거주공간에 대한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 년 3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체류허가를 취득하는 전문인력은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가 독일에서 상거하는 경우)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창업장학금 수혜자 체류허가:** 체류법 제 18 조 제 3 항 에서 의미하는 전문인력이 독일 학계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장학금을 받는 경우 앞으로 창업 체류허가를 최대 18 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및 직업교육생 고용

- **외국인 대학생 고용 확대:** 학생비자로 독일 대학에서 공부하는 제 3 국 국적자가 부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연간 제한 근무일수는 기존 120 일 혹은 240 반일에서 140 일 또는 280 반일로 늘어납니다. 새로운 규정을 통해 기업에서 근로대학생으로 주당 최대 20 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급여액이나 업무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직활동은 향후 대학진학 준비 교육과정을 다니면서 처음부터 해도 됩니다.
- **대학지원을 위해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향후에도 제 3 국 국적자가 독일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점은 대학을 찾는 동안 주당 최대 20 시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직업교육소를 찾기 위한 체류 기회 확대:** 제 3 국 국적자가 직업교육과정을 찾기 위해 입국하는 것도 계속 가능합니다. 잠재적인 지원자의 연령제한은 25 세에서

35 세로 높아지고 독일어 능력에 대한 요건은 B1 (GER)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제 3 국 국적자가 직업교육소에 지원하기 위해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최대 체류기간은 기존 6 개월에서 9 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체류허가 소지자는 주당 최대 20 시간 부직활동을 할 수 있고 최대 2 주 동안 수습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 **직업교육생 부직활동 기회 확대:** 향후에는 모든 직업교육생에게 주당 최대 20 시간 부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단기 정원 채용

개정법에 따라 자격여부에 관계없이 제 3 국 국적자를 단기 채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연방노동공단(BA)이 수요 정원을 설정하면 (특정 경제 부문 또는 직종에 따라 차별화하여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음) 이에 관심있는 고용주는 외국 근로자의 노동허가 또는 체류허가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는 임금단체협약체에 속해 있고 해당 단체협약 노동조건에 준해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 필요한 여행 비용 전액을 고용주가 부담한다고 보장해야 하며
- 계획된 고용기간은 12 개월 이내에서 8 개월을 초과하면 아니되며
- 주당 근무시간은 최소 30 시간이어야 합니다.

## 2024 년 6 월부터 적용되는 추가 개정사항

### 구직 기회카드 도입

구직활동을 위해 체류할 수 있는 기회카드가 도입됩니다. 기회카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동등성을 인정받아 체류법 제 18 조 제 3 항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간주되는 제 3 국 국적자는 별도의 특별 요건 없이 기회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외국 대학 학위나 최소 2 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직업자격증 (둘 다 해당 교육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어야 함) 또는 해외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직업교육 수료증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초 독일어 능력 (A1 GER 수준) 또는 영어능력 (B2 GER 수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독일 내 자격 인정, 언어능력, 경력, 연령, 독일과의 연관성, 동반 파트너 또는 배우자의 잠재력 등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회카드를 받으려면 최소 6 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회카드는 최대 1 년짜리로 발급되는데, 해당 체류기간 동안 생계비가 확보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카드로 독일에 체류하는 동안 주당 최대 20 시간 부직활동이나 수습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체류법 제 4 장 (제 18 조 - 제 21 조) 에 따른

체류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더라도 정식 고용 제의를 받은 상태라면 기회카드를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서부 발칸국가에 대한 규정

서부 발칸국가에 대한 규정은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국적자가 비규제 직종에서 어떤 형태의 고용이든 상관없이 독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이 규정은 원래 2023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전문인력 이민 촉진법에 따라 그 기한이 없어집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2024년 6월부터 연방노동공단이 승인할 할당량은 매년 50,000명입니다.

## 독일에서 전문인력으로 일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 자격 인정:**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자격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법 규정에 따라 자격증 인정을 받으려면, 특히 인정 파트너십 경우, 교육과정이 최소한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국가자격증이거나 국가가 공인하는 직업교육을 이수한 외국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일에 입국하기 전에 외국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독일에 입국한 후 직업자격 인정을 신청해도 됩니다. 인정절차와 독일이주에 대한 개별상담은 [핫라인](#), ["독일에서 일하고 살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정절차에 대한 상세정보는 ["외국 직업자격 인정"](#) 영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언어능력:** 언어능력은 특히 직업교육소나 진학할 대학을 찾을 경우는 물론 그 외 다른 경우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입증해야 합니다. 독일어 학습에 대한 상세정보는 ["독일어 배우기"](#) 라는 영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체류허가 관련 담당자:** 아직 자국에 계실 경우, 해당 비자발급 담당처는 독일 재외공관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독일 담당처 주소는 [세계지도](#)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독일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체류허가나 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은 거주지 관할 외국인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고용주를 위한 상세정보와 지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오리엔테이션:**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직업훈련생을 고용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자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릅니다. [고용주를 위한 신속체크](#) 에서 첫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상담:** 문의사항이나 제의사항이 있거나 외국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저희 [핫라인](#), ["독일에서 일하고 살기"](#)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성심껏 지원해 드립니다!

-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저희 파트너들의 프로젝트가 귀사의 채용계획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문인력 유치 프로젝트에서 귀사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